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현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72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30.

발의자 : 이현승 · 김한표 · 윤한홍

박완수 · 김도읍 · 성일종

강석진 · 이양수 · 박덕흠

정종섭 · 엄용수 · 이명수

윤영석 · 박대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, 매년 과도한 총허용량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량규제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임.

특히 서울시, 인천,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개발실적을 살펴보면, 매년 개발실적보다 총허용량이 과도하게 클 뿐만 아니라,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비공개됨에 따라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

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).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량규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허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